



태영상선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1번지 한진빌딩 신관 603호
TEL : (02) 753-1271~6 FAX : (02) 753-1270

문서번호 : TY-CBT-16-02

일 자 : 2016. 05. 09

수 신 : 화주사 제위

발 신 : 태영상선 컨테이너영업팀

제 목 :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

1. 평소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드리며,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.

2. 2016년 7월 1일부터 「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」 (SOLAS) 규정 및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라 화주분들께서는 컨테이너 반입 전 또는 선적 예정 선박의 입항 24시간 전의 시점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선사 또는 터미널에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(1)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획득 및 서류제출 주체: 화주(Shipper)

(2) 컨테이너 중량 측정 방법

1) 방법 1

컨테이너의 화물적입 및 Sealing 완료후 공인된 기관에서 컨테이너 총중량 측정

2) 방법 2

개별 화물의 무게와 화물의 포장, 고박에 사용되는 포장재, Pallet, 기타 고박장치의 전체 무게에 컨테이너 자체 무게를 합산. 동 방법에 의한 무게측정시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함

(3)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이 제공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선적 금지

4. 감사합니다.

붙임 1.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(행정예고) 1부. 끝.